

제 1202 호
1985.10.19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업무원
편집인 : 공보관 이광우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35-3337

계	보도국장	공보국장	공보관	공 보 관
				공 보 관

시 보

차 례

- ◎ 교육위원회규칙
 - 제 295호 : 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 2
 - 제 296호 : 서울특별시시설강습소에관한규칙폐지규칙 4
- ◎ 고 시
 - 제 706호 : 주택개발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 4
- ◎ 공 고
 - 제 613호 : 공원시설 (메니스장관리실및탈의실) 관리위탁 5

부 속								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1760

교육위원회규칙

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체육특기
자 선발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
한다.

1985. 10. 17.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최열곤

교육규칙제 295 호

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
자 선발에 관한 규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교육법시행
령 제 112 조의 11 제 2 항의 규정
에 의하여 고등학교 입학용 위한
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중
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종목) 체육특기자의 선발종
목은 별표 1과 같다.

제 3 조 (대회 의 범 위) 체육특기자로
선발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
의 1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입상
한 자로 한다.

1. 체육부 및 시·도교육위원회가
주최, 주관한 전국규모의 대회 및
동시·도 예선대회
2.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
체가 주최, 주관한 전국규모의 대
회 및 동 시·도 예선대회
3. 시·도 체육회 또는 이와 공

동 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·도
및 전국규모의 대회

4. 무용의 경우에는 다음의 대회
가. 시·도 교육위원회가 주최·
주관한 시·도 단위 이상대회
나. 무용학파가 설치되어 있는대
학(교)에서 주최·주관한 시
·도 단위 이상대회
다. 공공기관 또는 기타 권위있
는 단체가 주최·주관한 전국
규모의 대회

제 4 조 (입상범위) ① 제 3 조 규정에
의한 입상실적은 다음 각호의 1
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개인경기는 3위이상 입상한자
2. 단체경기는 3위이상 입상한 티
임의 선수와 입상하지 못한 잔
여티임중 티임당 우수순위가 2
위 이상인 선수로써 해당 경기
연맹의 추천을 받은자.

② 무용의 경우에는 2인무 입상을
제외한 군무입상은 인정하지 아니
한다.

제 5 조 (추천등에 의한 체육특기자)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
3 조 및 제 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,
이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로
인정할 수 있다.

1.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신
체조건, 소질 및 기타의 사유로
운동선수로서 잠재성이 있다고 추
천한 자중 교육감이 인정한 자.

<p>2. 체육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실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다.</p> <p>제 6조 (선발위원회설치)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제 7조 (선발위원회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-10 인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학무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사회체육과장이 되며, 위원은 중등학교장 및 체육계 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 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체육과 체육담당장학관이 된다.</p> <p>제 8조 (선발위원회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</p>	<p>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제 9조 (수당)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 10조 (운영세칙)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
--	--

(별표 1)

고 입 체 육 특 기 자 선 발 종 목

남·여별	종 목
남 자	육상, 수영, 축구, 야구, 테니스, 연식정구, 농구, 배구, 탁구, 핸드볼, 럭비풋볼, 싸이클, 복싱, 레슬링, 역도, 씨름, 유도, 권도, 궁도, 사격, 승마, 체조, 하키, 펜싱, 배드민턴, 태권도, 조정, 빙상, 아이스하키, 스키, 요트, 카누, 근대 5종 (33 종목)
여 자	육상, 수영, 테니스, 연식정구, 농구, 배구, 탁구, 핸드볼, 궁도, 사격, 체조, 하키, 펜싱, 배드민턴, 조정, 승마, 빙상, 스키, 무용, 싸이클, 유도, 요트, 태권도, 근대 5종, 카누 (25 종목)

서울특별시 시설강습소에 관한 규칙
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5.10.17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최열곤

교육규칙 제 296 호

서울특별시시설강습소에관한규칙폐지규칙

교육규칙 제 253 호 서울특별시 시
설강습소에 관한 규칙은 이에 폐지
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
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706 호

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 사업시행인가

1. 건설부고시 제 469 호 ('85.11.17)
로 구역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
제 518 호 ('85.7.31)로 사업계획결
정된 주택개량재개발 구로제 2 구역
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7 조

및 같은법 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
의하여 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시
행인가 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 16 조
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
주택개량과 및 구로구청 주택과와 구
로제 2 구역 재개발조합에 비치한다.

1985. 10. 19.

서울특별시장

가. 조합설립인가

- 1) 명칭 : 구로제 2 구역 재개발조합
- 2) 주소 : 구로구 구로 6 동 119-7
번지일대

나. 사업시행인가

- 1) 사업의 명칭 : 구로제 2 구역 ,
주택개량재개발사업
- 2) 위치 및 면적 : 구로구 구로 6
6 동 73-15 번지의 79 필지
10,167 제곱미터
- 3) 사업내용
지하 2 층 - 지상 3 층 상가
지상 4 층 - 지상 15 층 아파트 118세대
- 4) 인가년월일 : '85.10.19
- 5) 사업시행기간 : '85.10.19-'87.12.31
- 6)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
건물명세 : 별첨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613 호

공원시설(테니스장관리실및탈의실)관리위탁

- 1.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56
번지 장안정 근린공원내 증축한 테
니스장 관리실 및 탈의실을 도시
공원법 제 6 조 제 2 항에 의거 이
를 공고한다.
- 2.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공원녹지
과에 비치하여 이에 관계인에게 보

인다.

1985. 10. 19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위치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
동 356 번지
- 나. 시설종류 및 명칭 : 테니스장 관
리사무실 및 탈의실
- 다. 위탁관리자 : 동대문구 상봉동
127-39 번지 김응환
- 라. 시설내역 : 콘서트 (조립식)
1 동 38.88 ㎡
- 마. 관리기간 : 85.9.13 - 85.12.31
- 바. 관계도면 : 생략